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6433 제출연월일: 2024. 12.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 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 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 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제85조 중 "제38조의2·제38조의3"을 "제38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

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	
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	
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	
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	
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
	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
	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
	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
	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
	<u>외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u><삭 제></u>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 ⑥ (생 략)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 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
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
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 ⑥ (현행과 같음)<삭 제>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 · 제35조 · 제38조 · <u>제38조의2 · 제38조의2 · 제45조 · 제49조 · 제50조 ·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u>

제85조(준용규정)
제38조의2